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선희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330
----------	-------

발의연월일 : 2025. 7. 8.

발 의 자 : 백선희 · 강경숙 · 박은정
황명선 · 황운하 · 서왕진
박희승 · 박홍근 · 손명수
김준형 · 문대림 · 이상식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방위산업 수출 확대와 국제 공동개발 사업 참여 등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국내 방산업체가 외국인이나 복수국적자를 임원 또는 직원으로 선임하거나 채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이러한 외국인이나 복수국적자의 선임 또는 채용은 국제 협력과 전문성 확보 측면에서 긍정적인 부분도 있으나 전략적 기술을 보유한 산업에 대한 외부의 접근성이 높아져 국가안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음.

이에 방위산업체가 외국인이나 복수국적자를 임·직원으로 선임 또는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 방위사업청장의 승인을 얻도록 함으로써 인적 요소에 내재된 국가안보상의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관리장치를 마련하여 방위산업기술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0조의3

신설).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0조의3(방산업체의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 임·직원 채용 등의 승

인) ① 국방과학기술의 해외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산업체가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임원 또는 직원으로 선임하거나 채용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미리 방위사업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방산업체의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에 대한 임·직원 선임 또는 채용이 국방과학기술 보호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 후 승인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위사업청장은 승인을 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달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승인의 절차·방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국인 임·직원 채용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를 임·직원으로 선임하거나 채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50조의3(방산업체의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 임·직원 채용 등의 승인) ① 국방과학기술의 해외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산업체가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임원 또는 직원으로 선임하거나 채용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미리 방위사업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u> <u>②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방산업체의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에 대한 임·직원 선임 또는 채용이 국방과학기술 보호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 후 승인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위사업청장은 승인을 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달 수 있다.</u> <u>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승</u>

	<u>인의 절차 · 방법 · 기준 등에</u> <u>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u> <u>령으로 정한다.</u>
--	--